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
삼성중소형FOCUS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 4. 17

3. 정정 사유
-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 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추 가)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 수 청약할 수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추 가)	나. 종류형 구조 (2)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전용 수익증권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 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 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 · 설립되는 경우는 제 외)
8.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추 가)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 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 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삭 제) (2)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조건	투자대상	투자대상 조건
	주식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또는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함),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단, 중소기업(아래의 '가','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이 경우 편입시점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편입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기업으로 봄 가. ~나. (생 략)	주식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이 경우 편입시점에는 중소기업주에 해당하였으나 편입 이후 중소기업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목은 중소기업주로 봄 가. ~나. (현행과 같음)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추 가)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나. 투자 제한 (2)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하 이 목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파생결합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증서 또는 은행·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추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추 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추 가)		가. 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Op(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Op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매수 청약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되는 경우는 제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라.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추 가)		가. 수익자총회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추 가)	나는 평균가액에 신탁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는 평균가액에 집합투자업자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추 가)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추 가)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 ②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추 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2) 수시공시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